

의안번호	2212017
의 퇴 인	김원이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1.
추계번호	25A4138
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국가 등의 책무)	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* 기존 책무 규정에 “인공지능 활용 촉진”을 추가	의무규정
2	안 제5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)	산업통상부장관은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(제1항) 종합계획에는 ①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,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, ②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, ③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* 기존 종합계획에 “인공지능 활용”에 관한 사항을 포함	의무규정
3	안 제6조 (실태조사 등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7조 (산업인공지능위원회)	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 * 기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변경	의무규정
	안 제8조 (위원회의 기능)	산업인공지능위원회는 ①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추진, 제도 수립 및 정비, ②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업등 지원, ③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* 기존 심의 사항에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	

- 1) 안 제1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.
1.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목표
 2. 선도사업 내용
 3.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대효과
 4.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, 생산 또는 투자 계획
 5.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
 6.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
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,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1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)	기업 등의 산업데이터,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, 장비·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를 설립·운영할 수 있음 (제1항)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기술·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* 이 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전문회사의 범위를 “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”에서 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”로 확대	재량규정
6	안 제12조 (산업 데이터 및 산업 인공지능의 표준화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,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산업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3조 (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·확보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4조 (산업데이터 플랫폼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·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·거래, 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6조 (선도사업에 대한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1)에 따라 선정한 선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①기술개발 및 사업화, ②신제품·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9조 (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)	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·기관 및 단체를 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혁신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는 ①산업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, ②산업현장에서의 산업인공지능 실증 및 성능검증, ③산업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 지원 사업 등을 수행(제2항)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4항) * 기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로 개편하고 사업 수행 범위 확대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1	안 제20조 (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술·장비·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품·서비스(이하 “기술등”)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관련 기술등 개발 및 사업화, ②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, ③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12	안 제21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①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, ②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, ③석·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	재량규정
13	안 제22조 (금융 및 세제지원 등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,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 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(제3항) * 기존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의 목적에 “인공지능 활용” 추가	재량규정
14	안 제23조 (국제협력 등)	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, 외국의 정부·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(제1항)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, ②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, ③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음(제4항) * 기존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에 “인공지능 활용” 추가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5	안 제24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·지원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* 기존 우수기업 등 선정·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등 추가	재량규정
16	안 제24조의2 신설 (산업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·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①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, ②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 개발·시험·평가·실증 등의 이용 지원, ③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17	안 제26조 (전담기관의 지정)	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 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·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 * 기존 전담기관 지정 목적에 “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”을 추가	재량규정
18	안 제27조 (협회의 설립)	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(제1항)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 *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협회의 범위에 “인공지능 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자”를 추가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3조 (국가 등의 책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)	추가재정소요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
3	안 제6조 (실태조사 등)	추가재정소요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
4	안 제7조 (산업인공지능위원회) 안 제8조 (위원회의 기능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11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안 제12조 (산업데이터 및 산업 인공지능의 표준화)	추가재정소요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
7	안 제13조 (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)	추가재정소요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
8	안 제14조 (산업데이터 플랫폼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9	안 제16조 (선도사업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0	안 제19조 (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1	안 제20조 (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)	추가재정소요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2	안 제21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3	안 제22조 (금융 및 세제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4	안 제23조 (국제협력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5	안 제24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·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6	안 제24조의2 신설 (산업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7	안 제26조 (전담기관의 지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8	안 제27조 (협회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이 법의 제명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수립 목적·내용, 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각종 재정 지원의 범위에 “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사항” 등을 추가하는 내용
 - 개정안의 내용 중 안 제5조(종합계획 수립), 제6조(실태조사), 제12조(산업인공지능 표준화), 제13조(산업데이터 품질관리) 및 제20조(기술·서비스 개발 지원)의 경우 현재 개정규정의 취지에 따라 실시 중인 기존 사업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(안 제5조) 현재 수립된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(산업 AI 내재화 전략)이 이미 산업 AI를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, 수립 당시 관련 예산이 편성·집행됨(2022~2023년 총 3,400만원)
 - (안 제6조) 산업현장의 DX 및 AI 수준, 데이터·프로세스 혁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음(2026년도 예산안 1억 4,100만원)²⁾
 - (안 제12조) 우리기업에 적합한 국제표준 수립을 위하여 산업데이터 기반 AI 소프트웨어, 제품 등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음(2026년도 예산안 19억원)³⁾
 - (안 제13조)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·확보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전처리 자동화 기술 지원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음(2026년도 예산안 63억 2,500만원)⁴⁾
 - (안 제20조) 공급기업의 산업 AI 솔루션을 수요기업 현장에 적용·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구축 예산과 산업 AI 관련 기술 개발 예산 등이 기 반영되어 있음(2026년도 예산안 총 398억 2,200만원)⁵⁾
- * [참고자료]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산업 인공지능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

2) 사업명: 산업인공지능(AI)전환및확산기반조성(일반회계, 3174-379)-산업AX 실태조사

3) 사업명: 산업디지털전환적합성인증및실증기반구축(일반회계, 3174-336)

4) 사업명: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(R&D)(일반회계, 3174-364)

5) 사업명: 산업AI솔루션실증·확산지원(일반회계, 3171-390) 등 7개 사업

- 그 밖의 개정규정의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 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
- (안 제3조) 권고·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
 - (안 제7조 및 제8조) 기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가 산업인공지능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위원 정수가 증가하거나 심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회의 횟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지출 증가가 수반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확대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현행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(위원장)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7명, 위촉 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위원회 운영을 위해 총 4,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(2026년도 예산안 기준)⁶⁾
 - (안 제11조) 현재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AI 관련 기술·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이 없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사업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(안 제14조)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의 공유·거래와 플랫폼의 신뢰성·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재 설치된 산업 AI 지원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나,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SW 개발 난이도, 투입 공수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 결과를 구체적인 액수로 산출할 수 없음
 - － 현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산업 AI 지원 플랫폼을 유지·운영하기 위한 예산 2,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음⁷⁾
 - (안 제16조) 재정 지원 가능한 선도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사업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될 수 있으나, 확대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출 수준 또한 국가재정 여건 및 정부의 재원 투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6) 사업명: 산업인공지능(AI)전환및확산기반조성(일반회계, 3174-379)-산업AI위원회 운영

7) 사업명: 산업인공지능(AI)전환및확산기반조성(일반회계, 3174-379)-산업AI 지원 플랫폼 운영

- (안 제19조) 기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가 산업인공지능 혁신센터로 개편되면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새롭게 실시될 사업의 규모와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
 - － 현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6년도 예산안 기준 11억원임⁸⁾
- (안 제21조) 현재 산업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활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이 없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사업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22조) 현행 규정을 근거로 한 산업 디지털 전환 금융지원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개정안에 따라 해당 지원이 인공지능 분야로 확대되는 경우 재정소요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, 세제지원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안 등 연계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재정 부담 규모를 추산할 수 없음
- (안 제23조)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투입 예산 등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24조)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포상 범위 및 투입 예산 등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24조의2) 산업통상부 예산으로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재 정부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어 사업 내용이나 추진 일정, 예산 투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

8) 사업명: 산업인공지능(AI)전환및확산기반조성(일반회계, 3174-379)-산업AI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(민간 협력 얼라이언스)

- (안 제26조)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전담기관에 위탁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27조) 현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관련 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이 없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사업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예산 투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* [참고자료]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산업 인공지능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

- 이에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의 범위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수반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산업 인공지능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조문번호(제목)	세부사업명(코드) - 내(내)역사업명	사업 내용	예산	
			2025	2026안
제6조(실태조사 등)	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(3174-328) - 산업DX 정책지원 (실태조사)	산업디지털전환 실태조사	140 (2,563)	-
	산업인공지능(AI)전환및확산 기반조성(3174-379) - 산업AX실태조사	산업현장의 디지털전환 및 AI 활용 수준, 데이터·프로세스 혁신 역량 등을 종합 조사·분석하여 산업AI 정책 및 산업AX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	-	141 (1,329)
제7조(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)	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(3174-328) - 산업DX 정책지원(위원회 운영)	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운영	48 (2,563)	-
	산업인공지능(AI)전환및확산 기반조성(3174-379) - 산업AI위원회 운영	산업AI 전환 관련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선도사업 선정·지원 등을 심의·조정하는 정책 위원회 운영	-	40 (1,329)
제12조(산업 데이터의표준화)	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구축 (3174-336)	AI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산업데이터 기반 국제 인증체계 및 실증 기반구축	2,000	1,900
제13조(산업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)	산업AI용 데이터전처리 자동화 기술개발(R&D)(3174-364)	산업 AI 학습 데이터 자동화 전처리 솔루션 기술개발	3,200	6,325
제14조(산업 데이터 플랫폼)	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(3174-328) - 산업DX 지원 플랫폼	기업 경영 전반의 디지털전환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DX 기반 조성(플랫폼 구축)	348 (2,563)	-
	산업인공지능(AI)전환및확산 기반조성(3174-379) - 산업AI 지원 플랫폼 운영	산업 인공지능 전환 및 확산 기반 조성 체계 구축 추진	-	20 (1,329)

조문번호(제목)	세부사업명(코드) -내(내)역사업명	사업 내용	예산	
			2025	2026안
제19조(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)	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(3174-328) -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운영	기업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DX 기반 조성	1,305 (2,563)	-
	산업인공지능(AI)전환및확산 기반조성(3174-379) - 산업AI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(민간 협력 얼라이언스)	기업 수요기반 AX 컨설팅, 기업간 협업·매칭, 선도과제 발굴, 교육· 홍보 등을 지원하는 협업지원센터 운영	-	1,100 (1,329)
제20조(기술· 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)	제조데이터표준·인공지능 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 지원기술개발(3174-366)	제품 전주기 MCF 플랫폼 및 제조데이터표준 기반 핵심공정 탄소저감 기술개발	3,500	7,212
	한국형 Manufacturing-X 플랫폼(R&D)(3174-420)	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 개발	-	5,250
	첨단소재 특화형 AX 혁신 플랫폼 구축 및 실증 (3174-380)	첨단소재 특화형 AX 혁신 플랫폼 기반 조성	-	2,200
	철강금속디지털전환(DX) 실증센터구축(3174-352)	철강·금속 산업 DX 실증센터 구축 및 선도기업 육성	2,240	3,360
	No-Code 제조기술혁신 생태계 구축(3174-496)	노코드 기반의 제조기술 혁신 솔루션 생태계 구축	2,250	3,000
	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 AI에이전트기술개발 (R&D)(3174-416)	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상황 인지하고 해결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·실행하는 AI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	-	6,000
	산업AI 솔루션 실증 확산 (3171-390)	산업 인공지능 솔루션의 업종별 실증 및 확산 추진	12,800	12,800

주: 특정 내역사업만 해당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내역사업의 예산액을 기입하고, 괄호 안에 세부사업의
전체 예산액을 기입

자료: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 및 2025년도 확정예산,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